

청소년게임제공업 (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)자 등록증

1. 등록번호: 제 호
2. 성명(대표자):
3. 생년월일:
(외국인등록번호)
4. 상호(법인명):
5. 영업소 소재지:
6. 영업소 면적: m²

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2항·제4항·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게임제공업(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)자 [] 등록증 [] 변경등록증을 [] 교부 [] 재교부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 ·
특별자치도지사 ·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직인